

『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

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「서울특별시 출자·

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

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

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했고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